인천항 선박저속운항(VSR) 프로그램 운영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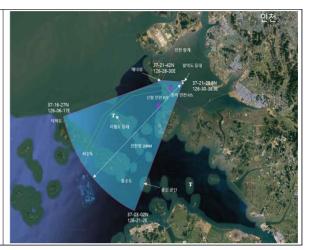
Ⅱ 배경 및 목적

- □ (추진배경) 항만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선박의 저속운항을 통해 연료 사용량 절감*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유인
 - * 선박저속운항 시 감소되는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연료사용량 감소,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도 감소
- □ (추진목적)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저속 운항(12노트↓) 유도를통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선박저속유항 프로그램 추진
 - **인천항의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적용**을 위한 **세부운영 방안** 수립 및 시행
 - ※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(VSR,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):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 부터 입항선박이 12노트(또는 10노트) 이하로 입항 시, 항비(선박입출항료)를 일정 부분 감면
 - 지난해(1차년도)의 운영결과를 분석, 선사 참여율 제고 및 저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개선 추진

- ∘ 「항만대기질법」제11조 1항: "해양수산부장관은 ··· 저속운항해역을 정하여 고시하고, ···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"
- ∘ 「**항만대기질법」시행령 제12조 5항**: "해양수산부장관은 ···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한다."
-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방안(해수부 항만운영과-5930, '19.11.28)
-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(관계부처 합동, '20.11.2)
-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^{개정}(해수부 제2020-247호, '20.12.30.)

인천항 VSR 프로그램 운영

- П
- □ (대상해역) 인천항 진입 항로 등을 포함할 수 있는 팔미도 등대를 기준으로「항만대기질법」의 '항만대기질 관리구역' 범위 내 20해리
 - < 인천항 저속운항해역(「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」고시 >
 - 팔미도 등대(37-21-29.8N 126-30-38.9E)와 해녀섬(37-21-42N, 126-26-30E)을 연결하는 선
 - 해녀섬과 덕적도 끝단(37-16-27N, 126-06-17E) 을 연결하는 선
 - 팔미도 등대와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 (37-03-02N, 126-21-02E)을 연결하는 선
 - 팔미도 등대로부터 덕적도 끝단(37-16-27N, 126-06-17E)과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 (37-03-02N, 126-21-02E)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



- □ (대상선종) 컨테이너선(41), LNG운반선(56), 자동차운반선(27), 세미컨테이너선(42) 4개 선종 중 3,000톤 이상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운항*한 선박으로 설정
 - * 대상 제외 선박: ①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%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, ②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, ③ 장안도선점(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)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
- □ (권고속도) 선종별 평균 속도를 고려하여 입항시 **평균속도가** 높은 선박은 12노트 이하, 평균속도가 낮은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설정
 - ㅇ 대상선종별 권고 속도

< 인천항 대상선종별 권고속도 >

선종	권고속도(Knots)	선박(Port-MIS Code)	비고
컨테이너선	12	41	
자동차운반선	12	27	
LNG운반선	10	56	
세미컨테이너선	10	42	신규 추가

※ 필요시 항만 대기질 저감 효과, 입출항 선박 등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선종. 권고속도 등 세부운영방안 변경 추진('22년 3차년도 시행시 반영)

- □ (사용료 감면) 최대 5억원 내에서 선종별 선박입출항료 감면
 - 정책 효과가 양호하게 기대되는 선박(우선순위)을 고려, 컨테이너선 (30%), 자동차운반선(30%), LNG운반선(15%), 세미컨테이너선(15%) 차등 감면
 - 계절관리제 기간('21.1~'21.3) 참여 선박에 대해 10%p 추가 감면
 - * 컨테이너선(40%), 자동차운반선(40%), LNG운반선(25%), 세미컨테이너선(25%) 감면
 - 다만, 감면액이 지원 상한액(5억원) 초과시 상한액 규모 내에서 참여 선사별로 감면 금액 배분(지급율 정율인하)
 - 해당 선박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% 이상 저속 운항 참여시 감면 제공 ※ 선박 참여율 90%수준을 목표로 매년 인상 추진(해수부)
 - 다른 정책에 따라 이미 항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감면액을 제한 항비에서 추가 감면 혜택 제공
 ※ (예시) '컨'선 선박입출항료 100만원, 기존감면액(50만원) → 50만원의 30%(15만원) 추가 감면

□ (운영 및 검증) 2021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

- (제출서류) 저속운항선박 지원신청서를 Port-MIS를 통해 항만 당국(해수부)에 제출
 - * 선사·대리점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만 제출
- (인센티브 지급) '22년 상반기 중 2차년도 분 인센티브 지급
 - 연간 결산을 통해 선사에 일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
- (검증) 항만당국(해수부)에서 AIS 선박위치 정보로 참여선박 검증



붙임: 선박저속운항 관련 주요 Q&A 1부. 끝.

O1. 저속운항해역의 시작지점과 도착지점은?

- A. 선박 저속운항해역의 시작지점은 항만 내 등대 등 특정 지점으로부터 20해리 반경에 이르는 지점이며, 해당 지점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A. 도착 지점은 도선사가 탑승하는 도선점*이며, 도선점 보다 외해 방향에 위치한 정박지를 활용하는 선박은 정박지를 도착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
 - * 도선 면제 선박으로 도선사가 탑승하지 않는 선박은 도선점 중 육지와 가장 가까운 도선점을 도착지점으로 함.
- A. 단, 장안도선점(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)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은 저속운항프로그램 대상 선박에서 제외합니다.

O2. 저속으로 운항한 모든 선박에게 인센티브가 제공 되는지?

- A. 인천항의 경우 저속운항 대상선박은 세미 컨테이너선, LNG운반선, 컨테이너선, 자동차운반선 총 4개 선종이며, 대상선박 중 3,000톤 이상의 외항선이 정상 운항* 하여 항만에 입항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대상 선박이 됩니다.
 - * ①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%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. ②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. ③ 장안도선점(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)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은 제외
- A. 또한, 해당 항만에서 해당 선박이 연간 60%이상의 항차를 저속운항에 참여한 선박에게만 항비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.

O3. 이미 항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중복 감면을 해주는지?

- A. 기존 항비 감면 혜택에 의한 감면액 이후 잔액의 15%~30% 추가 감면이 이루어집니다.
 - * (예시) 기존 100만원의 선박입출항료에서 50%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던 '컨'선이 프로그램 참여시 기존 감면액(50%)을 제외한 50만원의 30%인 15만원 추가 감면
- A.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선박입출항료 감면율 상향(10%p)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.

Q4. 증빙자료 제출 여부는?

- A. 1차년도와 달리 선사·대리점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- A. 항만당국(해수부)에서 AIS 선박위치 정보로 참여선박을 검증하며, AIS 고장 및 미설치 등으로 저속운항여부가 검증 불가능한 선박은 저속 운항프로그램 대상 선박에서 제외됩니다.

Q5. 2차년도 감면액 환급 시기는?

- A. 항비 감면액은 선박별 검증 완료 및 '21년 결산 이후 시점인 '22년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.
- Q6. 항만별 감면액 지급 상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이 초과되면 감면액이 어떻게 조정 되는지?
 - A. 항비 감면액이 각 항만공사의 지원 상한액 초과시 상한액 규모 내에서 참여 선사별로 항비 감면 금액을 배분하게 됩니다.
 - * (예시) 상한액이 10억원이나 총 감면액이 12억원으로 20% 초과한 경우 감면율을 20% 인하하여 선사에 24%, 12% 감면 혜택 적용

Q7. 선박의 관리 선사가 바뀔 경우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되나?

- A. 선박의 선사/대리점 변경 시 해당 선박의 당해연도에 총 항차를 기준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인센티브 지급은 각 선사의 비율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 - * (예시) S선박이 '20년 10항차 중 6항차를 저속운항 참여를 통해 지급대상 선박이 되었는데 A선사 소속으로 4항차 참여, B선사 소속으로 2항차 참여하여 운항하였을 경우 총 인센티브 지급 금액을 4:2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